

주요판결

[대법원]공시송달에 의한 납세고지가 위법한 경우

대법원
판결



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위해 납세자 주소지만 2회 방문 후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.

■ 사실관계

납세자가 2007년 5월 토지지분을 매도한 후 대금5억8,000만원과 지료 7억5,000만원 중 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. 이에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6,900만원을 부과하였다.

그런데 세무서가 납세자의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납세자의 주소지에만 2회 방문한 다음 납세자가 그 때 집에 없었다는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.

이에 대해서 납세자가 공시송달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.

■ 대법원 판결

대법원은 납세자의 주소지만 2회 방문한 후 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, 이에 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.

■ 평가

민사소송 또는 일정한 의사표시,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인정하고 있으나, 공시송달은 송달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최후적으로 인정되는 송달방법이다.

따라서 사안과 같이 납세자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으로 송달을 하거나, 주소지에 야간특별송달을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주소지에 방문 후 2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. 이러한 송달방식은 지나치게 행정편주의의적인 방식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.